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7일

나. 발 의 자: 신용하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박교상 · 박세채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라. 상정일자: 2024년 5월 17일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신 용 하 의원

나. 제안이유

- 구미시의 시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예방사업(안 제5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안 제6조)
-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안 제7조)
- 마약류 명예지도원(안 제8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1조의2, 제51조의5, 제51조의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0조의6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제정조례안은

- 구미시민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제 정 안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예방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기본계획(5년 단위)”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고, “시행계획(1년 단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적 계획임. 이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 하나, 구미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본 제정조례안의 기본계획을 첨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급 사업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 제6조는 본 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으로 예방 사업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추후 중독자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으로,

- 2023년 구미시 마약류 사범 검거는 마약 51건, 향정신성 의약품 49건, 대마 1건이며, 마약 관련 범죄율이 최근 3년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10대 미성년 범죄 까지 발생함.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매년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마약없이 안전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행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